

공항철도(주) 신입직원 모집

도심과 공항, 수도권과 지방, 국내와 세계의
허브역할을 하는 공항철도가
미래를 함께 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모집합니다.

2017년 10월
공항철도(주) 사장

1. 채용 직종 및 인원

| 채용직급 | 채용분야 | 채용인원 | | | | 비고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| | 계 | 일반전형 | 특별전형 | 장애인전형 | |
| 6급 | 합계 | 27명(이내) | 23명(이내) | 2명(이내) | 2명(이내) | - |
| | 사무영업 | 17명(이내) | 13명(이내) | 2명(이내) | 2명(이내) | - |
| | 전산(AFC) | 2명(이내) | 2명(이내) | - | - | - |
| | 신호통신 | 2명(이내) | 2명(이내) | - | - | - |
| | 토목 | 1명(이내) | 1명(이내) | - | - | - |
| | 장비운전 | 1명(이내) | 1명(이내) | - | - | - |
| | 승강/PSD | 2명(이내) | 2명(이내) | - | - | - |
| | 차량 | 2명(이내) | 2명(이내) | - | - | - |

※ 채용분야(응시직종) 간 중복지원은 불가

2. 지원 자격

가. 일반전형

- 1) 자격 : 공고일 기준 만 20세이상 인자 (1997. 10. 22. 이전 출생)
- 2) 병역 :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(2017. 10. 22. 기준)
- 3) 결격사유 :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(붙임1)
- 4) 근무조건 : 교대근무 가능자

나. 특별전형

- 1) 자격조건 : 現 공항철도 영업분야 협력업체 재직자로 2년 이상 근무자
* 사무영업에 한함
- 2) 자격요건이외에는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

다. 장애인전형

-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』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채용

-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
* 필기전형시 인성검사만 시행(이외 절차는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)

* 사무영업분야에 한함(타 분야 지원시 가점만 적용)

라. 공통 및 필수자격

| 분 야 | 필수자격 | 우대사항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 통 | - '17.10.22일 기준 병역필(면제자) -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- 교대근무 가능자 | - 장애인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- 변호사, 회계사, 법무사, 노무사,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|
| 사무영업 | - 철도종사자(신호취급)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| - 외국어 능통자(영어, 중국어, 일어) - 컴퓨터, 경영정보, 교통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|
| 전 산 (AFC) | - 전자, 정보통신, 전산, 컴퓨터, 자동제어, 전기 관련 전공자 - 철도종사자(신호취급)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| - 외국어 능통자(영어, 중국어, 일어) - 전자, 정보통신, 전산, 컴퓨터, 전기, 자동제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|
| 신호통신 | - 전기, 전자, 정보통신, 컴퓨터, 자동제어 관련 전공자 - 철도종사자(신호취급)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| - 신호,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|
| 토 목 | - 토목공학 관련 전공자 | -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|
| 장비운전 | - 전기/전자/자동제어 관련 전공자 - 철도종사자(장비운전면허)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| - 철도장비운전면허 소지자 - 전기/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|
| 승강/PSD | - 기계/전기/전자 및 승강기 관련 전공자 | - 기계/전기/전자 및 승강기 관련 자격 소지자 |
| 차 량 | - 기계, 전기, 전자, 통신, 제어계측 관련 전공자 | - 철도차량 관련 자격 소지자 - 기계/전기/전자 관련 자격 소지자 |

3. 입사지원서 접수

- 1) 접수기간 : '17. 10. 23.(월) ~ '17. 10. 30.(월), 15:00까지
- 2) 접수방법 : 인터넷(온라인) 접수만 가능
 -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3) 접수 : <http://oras.jobkorea.co.kr/arex>
- 4) 유의사항
 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학점, 자격증명, 영어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영어점수 사본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4. 전형절차

1) 필기전형(필기시험 + 인성검사)

- 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- 일자 : 2017. 11. 4.(토), 10시 ~
- 장소 : 추후 공지
- 필기시험 : 직업기초능력검사 + 일반상식 (고득점자 순)

| 직업기초능력검사 | 일반상식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자원관리능력 | 기본상식 |

- 인성검사 : 직무수행 등에 요구되는 기본 인성 측정

2) 면접전형

- 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- 일자 : 2017. 11. 9.(목), 10시 ~
- 장소 : 공항철도 대회의실
- 평가항목 : 대인관계, 책임감/협력성, 성품/인성, 직장관(직업관) 등
- * 진행방식 : 조별 집단면접(多:多), 자기소개 후 질의응답

3) 신체검사 및 철도적성검사

-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

* 사무영업(전산) 및 신호통신, 장비운전 등 신호취급 적성검사 등에 관한 불합격 판정 기준 적용(철도적성검사) (판정기준 붙임파일 참고)

4) 최종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철도적성검사 모두 합격한 자

* 사무영업(전산) 및 신호통신, 장비운전 등 신호관련 직종은 철도적성검사 불합격시 탈락

- 신원조사(조회) 결과 부적격자 탈락

5. 시험일정

| 채용 절차 | | 일 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○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| | 10.23. ~ 10.30. | 오후3시까지 |
| ○ 서류전형 | 심 사 | ~ 10.31.(화) | - |
| | 합격발표 | ~ 11.1.(수) | |
| ○ 필기전형 | 필기시험 | 11.4.(토) | - |
| | 인성검사 | 11.4.(토) | |
| | 합격발표 | ~ 11.7.(화) | |
| ○ 면접전형 | 면 접 | 11.9.(목) | - |
| | 합격발표 | ~ 11.10.(금) | |
| ○ 철도적성검사 | | 11.14.(화) | 코레일 인재개발원 |
| ○ 신체검사 | | 11.15.(수) | 지정병원 |
| ○ 최종 합격자 발표 | | ~ 11.17.(금) | - |
| ○ 신입사원 입사 | | 11.27.(월) ~ | - |

※ 채용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 변경된 일정을 게시할 예정입니다.

6.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

- 1)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2)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의 허위내용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3)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이 제한되오니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4)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, 오기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또한 허위내용 입력, 결격사유 발견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5)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6) 궁금하신 사항은 FAQ를 참고하여 주시고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Q&A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- 7) 채용관련 문의 (평일 9 ~ 18시) : 032-745-7223

붙임-1 채용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1조)

- 1)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2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)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)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)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- 8)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
- 9) 청탁, 부당채용 등 채용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

붙임-2 철도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

| 검사대상 직무 | 주기 | 검 사 항 목 | | 불 합 격 기 준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문답형 | 반응형 | |
| 역무/AFC | 최초 검사 | · 지 능 · 작업태도 · 품 성 | · 주의력 - 주의배분능력 · 민첩성 - 적응능력 - 판단력 - 동작정확력 - 정서안정도 | ·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(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) · 작업태도검사, 주의배분능력검사, 적응능력검사, 판단력 검사, 동작 정확력 검사 중 부적합등급이 2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·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|
| 신호통신/ 차 량 | 최초 검사 | · KR지능 · 작업태도 · 품 성 | - | · 지능능력검사 표준점수 85점 미만인 자 불합격 ·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· 품성검사결과 "요관리형"이고, 작업태도검사결과 "문제형"인 자는 불합격 |

1.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

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(제4조 관련)

1. 일반결함
 - 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 - 나.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
 - 다. 난치성 사상충병(絲狀蟲病)
 - 라. 중증인 고혈압증(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)
 - 마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
2. 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 -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 - 나.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
3. 치아 계통
 - 가. 아래턱관절 강직(強直), 저작근(咀嚼筋)의 질환 또는 악골(顎骨)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
 - 나.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
 - 다.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
4. 흉부
 - 가.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
 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
 - 다.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 중증 기관지확장증, 중증 폐기종,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
5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가. 심부전증(心不全症)
 - 나. 발작성 빈맥(150회/분 이상) 또는 기질성 부정맥
 - 다. 방실전도장애(房室傳導障礙)
 - 라. 동맥류
 - 마. 유착성 심낭염
 - 바. 관상동맥질환
 - 사. 폐성심(肺性心)
6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 - 가.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(脾機能亢進症)
 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
7. 생식비뇨기 계통
 - 가. 중증 요실금
 - 나. 진행성 신기능(腎機能)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(腎疾患)
 - 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(腎結核) 또는 생식기결핵
 - 라.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(腎症候群)

8. 내분비 계통

- 가.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
- 다.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
- 라.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
- 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

9. 혈액 또는 조혈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가.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
- 나. 혈소판 감소 자색반(紫色斑)
- 다. 재생불량성 빈혈
- 라.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)
- 마. 진성 적혈구증가증
- 바. 백혈병

10. 신경 계통

- 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,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- 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 - 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 - 2) 외상성 신경질환
 - 3) 말초신경질환
 - 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 - 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 - 6) 뇌전증(腦電症)

11. 사지(四肢)

- 가. 보조 장구(裝具)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·관절 질환자

12. 귀 :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

13. 눈

- 가.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인 경우
- 나. 두 눈의 시야협착(視野狹窄)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
- 다.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·활동성·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
- 라. 중심 시야 20° 이내의 복시(複視)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(眼球振盪)
- 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

14. 정신 계통

-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
- 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
- 라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

2. 철도안전법시행규칙(사무영업, 차량, 운전분야)

| 검사 항목 | 불합격 기준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최초검사·특별검사 |
| 가. 일반 결함 | 1)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) 중증인 고혈압증 (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,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) 3)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,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|
| 나. 코·구강·인후 계통 |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|
| 다. 피부 질환 |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|
| 라. 흉부 질환 |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) 활동성 폐결핵, 비결핵성 폐질환, 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 중증 기관지확장증 3) 만성 폐쇄성 폐질환 |
| 마. 순환기 계통 | 1) 심부전증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(분당 150회 이상)이나 기질성 부정맥 3) 심한 방실전도장애 4) 심한 동맥류 5) 유착성 심낭염 6) 폐성심 7) 확진된 관상동맥질환(협심증 및 심근경색증) |
| 바. 소화기 계통 | 1)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)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) 거대결장, 게실염, 회장염,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|
| 사.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| 1) 만성 신장염 2) 중증 요실금 3) 만성 신우염 4)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)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) 고도의 요도협착 7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|
| 아. 내분비 계통 | 1)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 2)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및 애디슨 병 3)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4) 중증인 당뇨병(식전 혈당 140 이상) 및 중증의 대사질환(통풍 등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. 혈액이나 조혈 계통 | 1) 혈우병 2)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)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)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) 5) 진성적혈구 과다증 6) 백혈병 |
| 차. 신경 계통 | 1) 다리·머리·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)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) 두개골 이상,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(신경 이나 신체증상)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) 뇌 및 척추종양,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) 전신성·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)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(유전성 무도병,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, 보행 실조증, 다발성 경화증) |
| 카. 사지 | 1)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) 난치의 뼈·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)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(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) |
| 타. 귀 | 귀의 청력이 500Hz, 1000Hz,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|
| 파. 눈 | 1) 두 눈의 나안(裸眼)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5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시력이 0.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8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.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.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 2) 시야의 협착이 1/3 이상인 경우 3)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, 활동성,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,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)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) 색각이상(색약 및 색맹) |
| 하. 정신 계통 |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2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) 뇌전증 6) 수면장애(폐쇄성 수면 무호흡증, 수면발작, 몽유병, 수면 이상증 등)이나 공황장애 |